지역난방 공동주택 세대 분배방법 [참고용]

(2017.11.01 기준)

가. 급탕열요금

급탕단가(원/TON)는 순수하게 시수를 가열하는데 소요된 열량에 대한 비용이므로 세대 급탕온수미터기의 검침유량은 세대 수도계량기의 검침유량에 합산하여 수도요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며, 기타 약품비, 동력비등은 해당 관리비목으로 부과함.
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' 중 급탕비를 말함

나. 급탕공급온도

세대급탕 사용온도는 온수와 시수를 세면기에서 섞어 대부분 40℃ 전후로 사용하는데 시수온도가 계절별로 다르므로 급탕공급온도도 계절별로 동계(10,11,12,1,2,3월)에 55℃이하, 하계(4,5,6,7,8,9월)에 50℃이하로 운영하고 급탕배관의 열손실을 줄여 세대부담을 완화함.

다. 난방 사용열요금

- 난방열량계가 설치된 세대의 난방열요금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이 책정 부과함.
- 단위가 kWh일 경우(1 kWh ≒ 860 kcal) 지역난방 사용요금(원/Mcal;부가세 포함) × 1.1(공동난방비*) × 0.86Mcal/kWh
- * 공동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 퇴수, 부대시설 사용, 세대계량기 고장, 설비보온 노후화 정도 등에 의해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난·급탕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(10%내외)하는 총체적인 사항.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열손실과 기타비용으로 구분 계측하여 분리부과 할 수 있음.
 - **단, 상기의 계산자료는 공동난방비가 10% 발생된 APT의 예시자료**로써, 공동주택 세대 열사용패턴 및 설비운영 상태에 따라 단지별로 달리 부과할 수 있음.

[공동주택 세대 열요금 분배단가]

2017. 11. 01 기준

(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)

| | 지역난방 | 세대난방 사용요금 | | 세대급탕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| 사용요금 (Mcal당) | 난방열량계가 kWh일 경우 | 난방열량계가 MWh일 경우 | 사용요금 (m³당) |
| 동절기(12월~익년2월) | | | | 4,900 |
| 춘추절기(3~5월,9~11월) | 70.785 | 66.96 | 66,960 | 3,900 |
| 하절기(6~8월) | | | | 3,600 |

2017. 07. 01 기준

(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)

| 구 분 | 지역난방 사용요금 (Mcal당) | 난방열량계가 | 사용요금 난방열량계가 MWh일 경우 | 세대급 탕 사용요금 (m³당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절기(12월~익년2월) | 71.764 | 67.89 | 67,890 | 4,980 |
| 춘추절기(3~5월,9~11월) | | | | 3,960 |
| 하절기(6~8월) | | | | 3,600 |